

1. 개정이유

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하여 연공적 요소를 축소하고,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디지털인사관리규정」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직위해제 외에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경력평정 배점이 조정됨에 따라, 평정점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(안 제48조, 별표7, 별표8, 별지18호)
- 나. 휴직증명서 신설에 따른 발급 근거 마련, 본인의 원(願)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첨부근거 마련 등(안 제9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직위해제를”을 “휴직·직위해제·면직처분을”로, “제26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”을 “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인의 원(願)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제12조제1항 중 “재직증명서의”를 “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”로, “재직증명서를”을 “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직증명서”를 “재직증명서, 휴직증명서”로, “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38조제1항”을 “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38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37조의3”을 “「디지털인사관리규정」 제6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결격사유조회회보서

10. 전력조회회보서

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0점”을 “20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27점”을 “18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3점”을 “2점”으로 한다.

별표 7 및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8조제1항 및 별표7,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인사발령 통지서) ① (생략)	제9조(인사발령 통지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임용권자는 <u>직위해제를</u>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「공무원 인사기록 ·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26조제3항에 따른 <u>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</u> 를 첨부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 <u>휴직 · 직위해제 · 면직처분을</u> ----- ----- -----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 ---- ----- ----. <u>다만, 본인의 원(願)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증명서의 발급)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<u>재직증명서</u> 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<u>재직증명서</u> 를 발급해야 한다.	제12조(증명서의 발급) ① ----- ----- ----- <u>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</u> ----- ----- ----- <u>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재직</u>	③ ----- <u>재직</u>

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.

제14조(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)

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기록을 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(이하 “표준인사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으로 작성·유지·관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·유지·관리해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5조(인사기록의 종류)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5. 결격사유조회 회보서
6. ~ 9. (생략)
10. 전력 조회회보서

증명서, 휴직증명서 -----

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38조----

-----.

제14조(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)

① -----

----- 「디지털인사관리규정」 제6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인사기록의 종류) ① 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결격사유조회회보서
6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전력조회회보서

11. ~ 13. (생 략) ② (생 략) 제48조(경력 평정의 방법) ① 경 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<u>30점</u>을 만점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한 다. 1. 영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<u>27점</u>으로 하여 별표 7의 기준 에 따라 산정한다. 2. 영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<u>3점</u>으로 하여 별표 8의 기준 에 따라 산정한다. ② (생 략)	11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48조(경력 평정의 방법) ① --- ----- <u>20점</u>----- ----- ----- --. 1. ----- ----- <u>18점</u>----- -----. 2. ----- ----- <u>2점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